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1.

발 의 자:박 정·양문석·어기구

송옥주 · 김주영 · 임오경

송기헌 · 안호영 · 민병덕

이학영 · 김현정 · 박해철

이기헌 · 문금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 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,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%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.

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.1%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, 같은 해 가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%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, 청년몰 인지도는 64%, 이용경험률은 31%고, 만족률은 51.2%로 불만족률 7.2%보다 7배

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,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정부와	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<u>①</u>		
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			
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			
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			
을 추진할 수 있다.	<u>,</u>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		
	<u>지원</u>		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		
	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		
	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		
	<u>지정할 수 있다.</u>		
<u><신 설></u>	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		
	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		
	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		
	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		
	<u>할 수 있다.</u>		
<u><신 설></u>	④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		
	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	
	<u>로 정한다.</u>		